

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유 통 특 작 과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외 17명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4. . .

발의자: 장미경·강승수·김근한·김낙관
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
박교상·박세채·신용하·이명희
이상호·이정희·이지연·정지원
추은희·허민근 의원(18명)

1. 제안이유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나. 부서검토: 유통특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기 타: 없음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홍보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11. (생략).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유통특작과

조 례 명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관계 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주요 사항 ○ 조례안 제정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검토 결과 ○ 2024. 7. 2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농업의 스마트화 지원으로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함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안 제5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1.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나 추후 부서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함.
- 현행사업은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으로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유통특작과 원예특작팀 김민정(054-480-5928)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축산과

조 례 명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주요 사항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검토 결과 ○ 축산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은 물론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최적의 사양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축사 적용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안정적 성장에 기여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제2항(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농가 수요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 예산을 공모를 통해 확보 가능
- 매년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비용 산출 가능

4. 작성자

- 축산과 축산진흥팀 최현진(054-480-5812)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조 례 명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 ☐ 주요 사항 ○ 조례제정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검토 결과 ○ 농촌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은 노동력 절감, 청년농업인 양성, 생산성 향상 등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현장·기술중심 디지털 농업 기반기술 보급 정착 및 확대 ▪ 디지털농업 정착으로 청년농업인 양성 및 농업인 세대교체 ▪ 농작물 안정생산 및 농작업 편의성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구매,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투자대비 효율성 문제 ▪ 농가수준에 맞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스마트팜 교육 및 IoT센서 기반마련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농촌진흥법」 제2조, 제7조, 제16조, 제25조2항
-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사업 및
보급사업은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추후 예산 확보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하며 현재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기술개발과 특화농업팀 송사라(054-480-4274)